

조선후기 쓰시마(對馬)의 화재와 조선의 대응

－ 『島中失火』를 중심으로 －

장순순*

| 목 차 |

- I. 머리말
- II. 자료 소개: 『島中失火』
- III. 화재의 발생과 조선의 대응
 - 1. 倭館에서의 화재
 - 2. 쓰시마번(對馬藩)과 에도(江戸)에서의 화재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쓰시마(對馬) 관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를 중심으로 조선의 쓰시마 인식이 조선의 대일정책 및 쓰시마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1660년(현종 1) 1월부터 1714년(숙종 40) 2월까지 약 54년간 부산의 두모포왜관 및 초량왜관, 쓰시마의 번청(藩廳)이 위치한 후추(府中), 그리고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치소였던 에도(江戸)에서 발생한 화재와 그에 대한 조선 정부의 구호 조치를 기록한 『島中失火』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선의 쓰시마 화재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준, 즉 전례에 따라 이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 hyongae@hanmail.net

루어졌으며, 화재의 규모, 피해 대상,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조치가 달라졌다. 특히 왜관에서 발생한 화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에도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쓰시마의 피해 여부에 따라 그 대응이 달라졌다.

조선전기부터 조선 정부가 쓰시마의 재난에 대해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쓰시마가 비록 영토적으로는 일본에 속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조선의 번속국으로 인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쓰시마에 대한 인식은 조선 후기까지도 유효했으며, 이는 쓰시마의 화재에 대한 조선의 대응 방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선후기 대일관계를 정리한 여러 외교 자료집에서 ‘홀전’ 항목이 설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도중실화(島中失火)』, 쓰시마(對馬), 왜관, 홀전(恤典), 쓰시마인식.

I. 머리말

『萬機要覽』에서는 ‘恤典’에 대해

“무릇 민인의 水災・火災를 당한 자와 시기가 지나도록 未婚 未葬한 자와 전염병으로 가족이 다 죽어 시체를 거두어 매장하지 못한 자에게는 홀전이 있는데, 서울은 호조와 진홀청 <宗室 자녀의 婚需는 호조, 그 나머지 홀전은 모두 진홀청>에서 하며 외방은 諸道에서 거행하고, 진홀청에서 會減한다.”¹⁾

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조선시대 홀전은 정부가 자국의 罹災民을 구하기 위해 시행한 특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일관계를 정리한 『增正交隣志』나 『邊例集要』 등 對日 외교자료집에서도 ‘恤典’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증정교린지』

1) 『萬機要覽』財用篇 5, 「恤典」.

에서는 제4권에 『홀전』이라는 항목이 있고, 冒頭에서 “왜인으로서 왜관에 있다가 죽은 자와 도중에 물에 빠져 죽은 자 및 館宇의 失火 등의 일은 조정에서 그때마다 경중을 구별하여 지급해 준 물품이 있었는데 이것을 홀전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 『변례집요』에도 ‘홀전’³⁾ 항목이 존재한다. 그리고 영조대 예조정랑을 지낸 李孟休가 편찬한 『春官志』에서는 대외관계를 기술한 권3 『倭館』 항목에서 ‘附失火改造’와 ‘附馬島江戶失火’라고 하여 왜관, 쓰시마번(對馬藩), 에도(江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⁴⁾

한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조선후기 한일관계에 관한 총 33종에 이르는 각종 謄錄類⁵⁾가 소장되어 있다. 이들 등록은 대부분 예조의 속사인 전객사⁶⁾에서 편찬되거나 보관하였으므로, 예조등록이라고도 한다. 『同文彙考』의 편찬에 기초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증정교린지』나 『변례집요』도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島中失火』와 『島中失火謄錄』이라는 문건도 이 등록류에 포함되어 있다. 『도중실화』

- 2) 『增正交隣志』 권4, 「恤典」, “倭人之在館身死者 中路淹死者及館宇失火等事 朝廷輒有分輕重資給之物 謂之恤典”.
- 3) 『邊例集要』 권10, 「支給 附 贈給 恤典 柴炭 禮物 私贈 限盡加料」(이하 恤典이라 함). 홀전에는 ‘物故’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 4) 『春官志』 권6 『倭館』에 ‘附館中諸倭, 修理, 島中失火’가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 5) 조선시대 관아에서는 그 집무사항의 관아문서와 관아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謄寫收錄한 책자를 작성하여 그 권의 ‘謄錄’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등록 작업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문서로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등록은 문서를 연월일 순으로 나열하였는데, 그 사이에 설명이나 考說을 붙이지 않는 1차 자료이다(金相湜, 「조선시대의 公文書管理」, 『書誌學研究』 1, 1986, 164쪽).
- 6) 대일관계 등록의 주요 편찬 관서인 전객사는 1405년(태조 5) 六曹屬司制가 정립될 때 예조의 속사로 설치되었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전객사는 정2품아문으로 중국의 사신 및 왜인·야인의 영접, 외국의 조공, 외국의 사신에 대한 宴享의 설치와 그들에 대한 賜給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한문종,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저술의 조사연구 對日關係 謄錄類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 1999).

와 『도중실화등록』은 1660년(현종 1) 1월부터 1714년(숙종 40) 2월까지 54년간에 걸쳐 부산의 두모포왜관 및 초량왜관, 쓰시마번(對馬藩)의 藩廳이 위치한 후추(府中),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치소였던 에도(江戸)에서 발생한 화재의 보고와 그에 대한 조선 정부의 구호 조치에 관한 전말이 정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첫째 국가의 중요문서로 정책수행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기록된 등록 가운데 ‘島中失火’ 즉 ‘對馬島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매우 이례적인 소재가 단독 등록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둘째 『증정교린지』나 『변례집요』, 『춘관지』 등 대일 외교자료집에서 국가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국의 이재민을 구제하는 특전을 정리한 ‘恤典’이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그것이 대외관계에서 조선정부가 기미질서 외교체제 속에 편입시켰던 쓰시마 관련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 조일관계는 중앙정부인 막부와는 적례교린관계로, 쓰시마와는 기미교린관계로 정의해 왔다. 또한 쓰시마에 대한 인식은 시기에 따라 변화의 추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對馬故土意識, 對馬屬州意識, 對馬藩屏意識 등으로 설명해 왔다.⁷⁾ 그러나 이러한 쓰시마에 대한 인식은 그 논의가 주로 관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조선과 쓰시마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작동되고 표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다뤄진 바 없는 쓰시마 관련 지역의 화재를 주제로 조선의 쓰시마인식이 조선정부의 대일정책 내지 對쓰시마

7) 조선시대 정부 혹은 지식인의 쓰시마 인식을 다룬 선행 연구로는 하우봉의 연구(『한국인의 대마도 인식』,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을 들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쓰시마 연구에 관한 성과는 장순순, 『조선시대 對馬島 연구의 현황과 과제』, 『東北亞歷史論叢』 41, 2013; 『통신사의 사행록을 통해서 본 조선 지식인의 대마도인식과 그 추이(推移)』, 『한일관계사연구』 75, 2022 등 참조

정책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도중실화』를 중심으로 쓰시마 관련 지역에서의 화재 발생과 그에 대한 조선정부의 구호 내용과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가 조선의 쓰시마인식, 나아가 조선의 대일인식 및 대일정책 실태를 밝히는데 미력하게나마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Ⅱ. 자료 소개: 『島中失火』

1. 서지 사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조선 후기 한일관계에 관한 등록 가운데 쓰시마의 화재와 관련해 두 개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하나는 『도중실화』이며, 다른 하나는 『各樣目錄』이다. 모두 필사본이다.

『각양목록』은 조선정부가 대일교섭에 참고할 목적으로 만든 각종 등록의 목록을 모아 놓은 것이며, 원 표제는 ‘각양목록 하’⁸⁾로 되어 있다. 규장각에서 작성한 해제에서는 그 편년에 대해 “편년은 미상이나 영조 연간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목록은 각 등록 별로 주요한 사항을 뽑아서 간략하게 정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표제가 ‘각양목록 하’로 되어 있어서 상·하 두 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양목록 상’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록된 목록의 전체 내용이나 그 분실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각양목록 하』에 목록이 수록된 등록은 ‘漂人領來謄錄(1~15권)’,

8) 『각양등록 하』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漂人領來謄錄』(청구기호 <奎貴 9910>)으로 소개되어 있다. 상세 정보에는 예조 전객사 편, 연도 미상, 판본 사항은 필사본, 세부 분류는 ‘吏部 政法類 外交·通商 見聞·交涉 漂流’로 소개되어 있으며, 책 권수는 1책 138장으로 되어 있다.

‘島主還島告知謄錄(1~4권)’, ‘回謝差倭謄錄(1권)’, ‘漂倭入送謄錄’, ‘漂倭入送回謝冊謄錄(1~2권)’, ‘島中失火謄錄’, ‘倭館移建謄錄’, ‘致賀謄錄’, ‘告訃差倭謄錄’, ‘書契違式謄錄(1~2권)’, ‘歲缸定奪謄錄(1~2권)’, ‘歲缸鷹連謄錄’, ‘沙器燔造類’, ‘論賞賜米謄錄’, ‘徵債謄錄-潛商作拏並付’, ‘漂倭作拏謄錄’ 등 16종이다.

이 가운데 『도중실화등록』은 비어있는 면을 포함하여 총 6면에 불과한 짧은 기록이다. 내용은 『도중실화』에 수록된 내용 중 화재와 관련된 부분만 간추려 정리한 것으로, 『각양목록 하』 제작 당시 『도중실화』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양등록 하』에 수록된 『도중실화등록』은 『도중실화』의 내용을 목록화한 자료로, 두 문헌은 동일한 자료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한편, 『도중실화』는 겉표지에는 왼쪽에 ‘도중실화’라고 쓴 제목이 있고, 1冊임을 의미하는 ‘單’이 그 밑에 적혀있다. 오른쪽 상단에는 ‘庚子至甲午’라고 쓰여 있어서, 이 자료가 1660년(현종 1)부터 1714년(숙종 40)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단에는 ‘禮曹典客司上’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자료가 예조 전객사에서 편집하여 보관했던 예조 전객사 보관본임을 보여준다. 표지를 열면, 첫 면 첫 행 상단 오른쪽에 ‘朝鮮總督府圖書印’이, 상단부에는 ‘서울大學校圖書印’이 찍혀 있다. 版心에는 ‘禮曹之印’ 인장이 찍혀 있다. 이를 통해 예조 전객사의 사료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로 이관된 후, 현재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객사 錄事들이 필사했으며, 종이 재질은 韓紙이다. 1冊 62張⁹⁾으로 이루어졌다. 한 면을 보면 테두리는 四周單邊이고, 10개의 界線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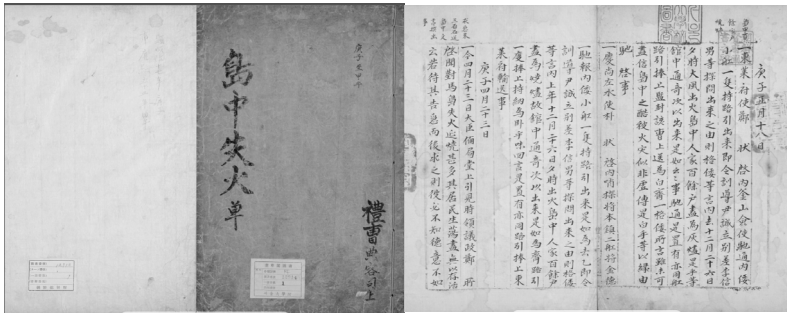
9) 『도중실화』의 규장각 청구기호는 <奎12914>이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에 실린 ‘기본 해제’의 서지정보에서는 1책(62장)으로 되어 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문 이미지파일을 살펴보면, 겉표지를 제외하고 비어있는 면을 포함한 것임이 확인된다.

10行이다. 각 行에는 대략 20여 字 정도가 가지런히 正書되어 있다. 첫 행에는 두 글자 내려진 곳에 ‘庚子正月十八日’과 같이 간지로 연도를 표기한 날짜가 적혔다. 그다음 행에 ‘一’을 표시하고 내용을 기록해 내려가며, 내용을 다 적었으면 또다시 행을 바꾸고 날짜를 쓰며 순서대로 필사하여 다음 문건과 구별하였다. 중요한 항목은 ‘一’을 표시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書眉에는 사안을 요약한 글을 적거나, 회신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回’라고 표시하여 문건의 전개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서미에 적은 기록은 『도종실화등록』의 목록과 동일한 것이 다수 발견된다.

총 62장이 五針眼訂으로 묶어져 1책으로 되어 있으며 중간 중간에는 비어있는 면이 있다. 1677년(숙종 3) 2월 23일 문건과 1680년(숙종 6) 사이에 7행이 비었으며, 다음 한 면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1689년(숙종 15) 3월 14일과 1706년(숙종 32) 10월 23일 사이에도 3행과 1면이 비었으며, 1714년(숙종 40) 2월 초6일 뒤에도 3면이 비어있어서 행을 3~7행을 남겨 둔 세 면까지 포함하면 총 6면이 비어있는데, 이는 미처 기록하지 못했거나 기록으로 남길만하다고 생각한 사안들을 추후라도 적어 넣으려던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1706년(숙종 32) 10월 23일 기록 다음에 2년 전인 1704년 6월 19일과 그보다 앞선 1698년(숙종 24) 10월 29일 기록이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 뒤에 1708년(숙종 34) 6월 1일 이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서 1704년 6월 19일, 1698년 10월 29일 기록은 이후 보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서지정보는 대체로 등록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¹¹⁾ 참고로 겉표지와 내지, 원문의 첫 장을 이미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이러한 형식은 전각사에서 편집한 대일관계 등록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이현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回謝差倭謄錄』 解題」, 『奎章閣』 63, 2023, 참조.

11) 이현주, 위의 논문, 390쪽



〈그림 1〉 『島中失火』의 원문 겉표지, 內紙, 원문 1~2면



〈그림 2〉 『各樣目錄 하』 『도중실화등록』 원문 겉표지 및 내지

2. 내용

『도중실화』는 54년간에 걸친 총 37건의 문건이 실려 있다. 이를 사안 별로 분류하면 총 23건에 관한 것이며, 왜관 및 그 주변에서의 화재 12건, 쓰시마번에서의 화재 4건, 에도에서의 화재 6건, 기타 1건이 기록되어 있다.

왜관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는 1건으로 1706년 10월 왜관을 출발하여 쓰시마로 돌아가던 중 萬松院送使 수목선에서 발생한 것이다.¹²⁾ 기타 1

12) 이때의 화재는 1706년 10월 23일에 조정에 보고된 것으로, 격왜 15명이 타고 있던

건은 1659년 12월 쓰시마에서 불이 나 민가 100여 호가 불에 타버려서 조선에서 쓰시마번에 구급미 300석을 구호한 일이 있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1663년 4월 쓰시마에서는 조선이 쌀 300석을 지급한 사실을 막부가 알 수 있도록 예조의 서계 속에 적어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¹³⁾

각 문건은 다양한 문서들이 행정절차대로 오고 간 行移體系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사실이 조선 측에 알려지게 된 경위부터 훈도, 별차 등 하부단위를 거쳐서 부산진, 동래부, 경상좌수영, 그리고 경상감사를 거쳐 조정에 보고되는 과정, 그에 대한 조정의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1713년(숙종 39) 11월 20일, 24일 문건은 그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 해 9월 寅時(오전 3시~5시) 경에 왜관 내 두부 만드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이웃으로 번져 下禁徒倭가 거처하는 2호, 釀酒長 행랑, 격왜가 거처하는 3호를 포함하여 90칸이 다 타버렸다. 이 사실은 훈도 韓後璵, 별차 玄德潤을 통해 부산첨사 李斗千에게 보고되었다. 부산첨사는 즉시 소속 감관과 색리를 왜관에 보내 화재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곧바로 훈도와 별차가 작성한 수본을 첨부하여 동래부사에게 보고하였다. 동래부사도 동래부 소속 감관과 색리를 보내 훈도, 별차 등과 더불어 직접 화재 상황을 조사·보고하도록 하였는데, 부산첨사의 보고와 같았다.

동래부사 李明俊은 이를 후인 11일에 경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예조에 직보하였다. 내용에는 ‘등록’을 두루 살펴본 결과 왜관에서의 화재는

1706년조 만송원송사의 수목선 1척과 격왜 20명이 타고 있던 1706년조 부특송사 수목선 1척 등이 공작미를 싣고 쓰시마로 돌아가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던 중 10월 11일 저녁(二更)에 만송원사 수목선에서 불이 난 것을 말한다. 화재로 동 배에 실려 있던 공작미 400석, 白絲 38稱, 공목 10동, 참깨(眞往) 10석, 콩(太) 20석과 기타 소소한 개 개인의 집 등이 모두 타버렸고, 격왜 15명은 겨우 죽음을 면했다(『도중실화』 병술(1706년) 10월 23일).

13) 『도중실화』 계묘(1663년) 4월 초3일, 4월 24일.

한두 번이 아니어서 조정에서 문위하고 구호(贈物)한 내용은 화재의 경중에 따라 달리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로 불에 탄 건물은 3대청 6행랑처럼 중요 사자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며, 쓰시마번에서 지은 건물로 ‘下倭’들이 머무는 곳이므로 문위와 구호는 필요치 않다. 다만 90여 칸에 이르는 건물이 불에 타버린 대형 화재인 만큼 ‘綏遠之道’, 즉 먼 나라의 사람을 대하는 도리로서 홀전을 내릴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을 내고, 예조에 처리를 요청하였다. 이어 20일에는 邊情에 관계된 일이라는 예조의 보고로 비변사에서 논의가 있었다. 국왕 숙종은 이번 화재로 소실된 건물은 쓰시마에서 지은 것으로, 관왜들의 거주 공간일 뿐이므로 문위를 논할 건은 아니다. 그러나 화재 피해가 100여 칸에 이를 정도로 큰 상황에서 홀전을 내리지 않는 것은 매몰찬 일이므로 공목 2동 공작미 30석을 왜관에 특별히 지급함으로써 ‘조정의 德意’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¹⁴⁾ 이처럼 『도중실화』에는 화재 발생부터 조선 조정에 보고되고, 이후 조정의 사후 조치 등의 과정이 단계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Ⅲ. 화재 발생과 조선의 대응

1. 倭館에서의 화재

왜관은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들이 머물던 곳으로 조일 간의 외교 의례와 무역이 이루어진 공간이다. 조선 후기에는 부산에만 있었다. 임진왜란 후 조일 국교가 재개되면서 1607년에 이른바 두모포왜관(舊館)이 설치되어 70여 년간 지속되었고, 이후 1678년(숙종 4)부터 1876년 조일

14) 『도중실화』 기사(1713년, 숙종 39) 11월 20일, 24일.

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 체결까지는 초량왜관이 있었다.¹⁵⁾

본래 조선 정부의 왜관 설치 목적은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쓰시마인)의 통제에 목적이 있었다. 왜관 내 건물은 크게 조선이 지어준 것과 일본 측, 즉 쓰시마변에서 물자와 비용을 조달하여 지은 건물로 나뉜다. 조선은 일본에서 도항한 외교사절의 숙소나 관수가·재판가·개시대청과 같이 무역이나 외교 업무상 중요한 기능을 갖는 관사나 업무 종사자(役人)들의 숙소, 연향대청과 같은 부속시설의 조영 및 비용을 담당하였다. 그 밖의 건물들은 일본 측, 즉 쓰시마변에서 마련하였다.¹⁶⁾

조선 측이 조영한 건물이 낡거나 화재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소요 경비의 조달은 경상좌수영에 소속된 동래지역의 7개의 진 가운데 主鎭인 부산진이 주관하였으며,¹⁷⁾ 객사도 훼손되는 대로 각 진이 힘을 합하여 보수하였다.¹⁸⁾

일본의 가옥구조는 흙벽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판자로 벽을 꾸미며, 건물과 건물이 연이어 있어서 불이 나면 화염이 순식간에 크게 번져서 쉽게 전소되었다. 왜관 내 건물도 마찬가지였다.¹⁹⁾

15) 임진왜란 후 조일 간의 국교재개 과정에서 일본 사절의 접대를 위해 설치된 절영도왜관은 임시왜관으로, 1601년(선조 34)경부터 1607년(선조 40) 두모포왜관 설치 때까지 존재하였다.

16) 『변례집요』 권11, 「館宇」 丙辰(1676년) 7월, 丁巳(1677년) 12월; 『東萊府事例』 「倭館」.

17) 건물에 따라서 多大鎭·西生鎭·豆毛鎭·西平鎭·開運鎭·包伊鎭에서 각각 나누어 담당하였다. 예컨대, 관수가는 부산진에서, 통사왜가와 재판가는 다대진에서 담당하였다. 서관 동대청의 경우 제1선송사가 머무는 곳은 다대진에서, 서행랑은 두모진에서, 동행랑은 다대진에서 수리를 맡았다. 參判使가 머무는 곳인 중대청은 포이진에서 담당하였으며, 서행랑과 東軒 2칸은 서생진에서, 西軒 2칸은 개운진에서 수리를 담당하였다. 副特送使가 머무는 서대청은 서평진에서 맡았고, 서행랑은 개운진, 서현 2칸은 두모진, 동현 2칸은 서평진에서 수리를 담당하였다. 선창은 두모포·개운포·포이포·서생포·다대포 등의 각 진에서 나누어 담당하였다(『草梁話集』). 왜관의 조영과 수리에 대해서는 장순순, 『조선시대 왜관변천사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참조.

18) 『증정교린지』 권3, 「館宇」.

『도중실화』에는 1667년부터 1713년에 이르기까지 왜관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한 보고가 12건 기록되어 있다. 공간별로 나뉘보면 두모포왜관에서 7건, 초량왜관에서 4건, 그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가 1건이다.

왜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부산진과 동래부는 화재 진압에 신속하게 개입하였으며, 조정에 대한 보고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공문서 전달체계에 따르면, 동래부사의 보고는 동래부사→경상감사→한양 조정으로의 보고 절차가 일반적이었다. 조정에서 내려보내는 회신도 역시 이 과정을 역순으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동래부사에게는 긴급 사안의 경우, 상부 기관인 경상감사를 경유하지 않고 한양 조정에 바로 장계를 올릴 수 있는 권한, 즉 直啓權이 있었으며, 화재에 관한 보고도 이 범주에 해당되었다.

1671년(현종 12) 11월 25일 3更(저녁 11시~새벽 1시) 경에 두모포왜관 내 서쪽 담장 안쪽에 초가로 된 그릇을 굽는 가건물(沙器燔造假家)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소식을 접한 부산첨사 李延禎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3鎭의 士兵을 지휘하여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고, 징발된 부산면의 煙戶軍과 3진의 사졸 등이 힘을 합쳐 불을 껐다. 군관 2인에게는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동래부사에게 보고되었고, 동래부사는 상부기관인 경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그날로 조정에 보고하였다.

화재의 피해는 전에 없이 컸다. 동·서관 및 금도왜방, 서승왜방, 여러 곳의 가건물, 物貨庫間 5곳, 크고 작은 배(倭船) 7척 등이 타버렸다. 왜관 내 건물은 연향대청과 公需間 두 곳만 남고 모두 타버렸다. 이에 대해 부산첨사는

19) 『도중실화』 경신(1680년) 6월 초5일.

“화재가 한밤중에 일어난 데다 바람이 거세어 왜관 내 건물이 일시에 터버려 왜인들은 맨몸으로 탈출하기에 급급하여 불을 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왜인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맨몸으로 피할 뿐 불을 끌 계책을 하지 못하고, 대개 집마다 莊藥鳥統과 허다한 화약 때문에 불을 끄고자 해도 앞에 가까이할 수 없었으며, 정미년(1667, 현종8) 왜관에서의 화재 후 왜인이 거처하는 건물이 모두 초가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빨리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²⁰⁾

라고 보고하였다.

당시 왜관에는 왜관 이건 문제로 조선에 건너온 이관차와 平成太와 平成之 등 600여 명에 달하는 송사왜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관수를 비롯해 왜관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연향대청과 공수간 두 곳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동래부에서는 관수, 차왜, 약간의 대관 등은 연향대청과 공수간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나머지 대관 및 以配庵 정관, 漂屍領來差倭, 세건 제4선 정관, 諸禁徒倭, 僧倭 등은 머물 곳이 없었다. 이에 관수는 가건물을 지을 동안만이라도 釜山客舍와 왜관 근처 민가에서 머물 수 있게 해줄 것을 동래부사에 요청하였다. 관수는 술을 마시고 몹시 취한 상태에서 부산진성 안에 들어와 부산첨사에게 가건물을 빨리 지어줄 것을 화를 내며 재촉하는 등 부산첨사의 설득에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²¹⁾

결국 우여곡절 끝에 관왜들이 왜관 근처 민가에서 임시로 머무는 것은 허가되었으나 국왕의 전패가 모셔져 있는 부산객사는 허용되지 않았다. 조정에서도 화재의 참혹함이 4년 전인 정미년(1667)보다 심하고, 그때의 화재로 인한 왜관의 복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20) 『도중실화』 신해(1671년) 11월 25일·27일.

21)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辛亥(1671년) 11월.

화재가 발생한 데다 날씨가 추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건물이 마련되기까지 관왜와 차왜 등이 잠시 민가에 머물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 것이다. 조정에서는 가건물을 마련하는 것도 큰 공사이므로 경상도에 피해 상황을 알려 인근의 수령들이 힘을 합쳐 참여하도록 하고, 부산면의 지역주민이 취사도구가 모두 타버려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관왜들에게 밥을 지어 제공해 주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정미년 화재의 예에 따라 왜관에 공작미 100석과 공목 5동을 들여보내고, 서둘러 왜관 건물을 재건해 줄 것을 경상도에 지시했다.

당시 조정의 구호 논리는 “먼 나라 사람을 대하는 제왕의 도리(遠人之道)라는 관점에서 (저들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변정에 관계된 일이므로”, “재앙을 구제하고 이웃을 구휼하는 도리(揀災恤隣之道)에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고 구제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공작미 200석과 공목 10동을 덜어내어 위로하게 하며, 역관이 글을 갖추어 관수에게 지급하여 나눠 쓰도록 하여 (관왜들에게) 조정의 軫念의 뜻(朝家軫念之意)을 보여주도록 하자”는 것이었다.²²⁾

이러한 조치는 같은 해 10월 3일 왜관에 와 있던 비선을 통해 곧바로 쓰시마번에 전달되었다. 비선에는 漂屍領來差倭 平重正과 금도왜 등이 동승하였다. 이어 27일에는 예조에서 왜관에 당상역관을 보내 관수와 왜관에 머물던 이관차왜 平成太·平成之에게 예단을 내려 위문하였다.²³⁾

그렇다면 화재 진압 후 조선정부가 취한 관례화된 추가 조치, 예컨대, 타버린 왜관 내 건물들의 수리 및 재건이나 왜관 내 일본인 내지 왜관 체류 각종 사자 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22) 『도중실화』,辛亥(1671년) 11월 15일;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辛亥(1671년) 11월.

23) 『도중실화』辛亥(1671년) 11월 25일.

다음 <표 1>는 『도중실화』에 나오는 왜관의 화재 상황 및 조선의 대응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조선후기 왜관에서 발생한 화재 및 조선의 구호 실태

발생시기	화재 피해	조선 측의 구호 내용	보고일/비고
1 1667 (현종8). 윤4.11	舊代官家 所接處 여러 곳 (東西館 大廳 左右行廊, 서관 북쪽을 지나는 행랑, 동쪽 끝 庫間 4곳과 대관 각 방, 여러 倭倭가 머무는 곳)/세건 제1 수목선 1척과 비선 1척 등 배 2척/공작미 2,000여 석, 求買 물품 燒燼	공작미 100石, 公木 5同을 관수에게 지급, 역관 문위, 증물(差倭 藤成供 橘成陳·관수에게 각각 白綿紬 3필, 白苧布 3필, 黑麻布 3필, 白木綿 5필, 黃毛筆 15자루, 花席 3장, 四張付油菴 2部, 眞墨 15笏)/가진물 수백칸 造給/本面居民 炊飯入給/ 타버린 深衣(求買品) 다시 지급	1667. 윤4.11
2 1671 (현종12). 11.25	沙器燬造 가진물에서 화재/東西館 및 禁徒倭房·書僧倭小殺 諸處 加진물, 物貨 庫間 5所, 小倭船 7척	공작미 200석, 公木 10동, 차왜 平成太·平成之·관수에게 當上역관 문위, 贈物(차왜 平成太·平成之·관수에게 각각 白綿紬 5필 白苧布 5필, 黑麻布 5필, 白木綿 10필, 黃毛筆 20柄, 花席 5장, 四張付油菴 2部, 眞墨 20笏)/가진물 造給/本面居民 炊飯入給	1671.11.25
3 1672 (현종13). 10.5	使倭 所接處(서관 서행랑)·禁徒倭房 3庫·醫倭房 1庫·鷹師房 1庫·木手房 5庫 合 11庫 등 총 380여 칸/下倭(木手倭·役夫倭 각 1명) 2명 燒死	공작미 200석, 公木 10동 지급, 역관문위, 贈物(白綿紬 5필 白苧布 5필, 黑麻布 5필, 白木綿 10필, 黃毛筆 20柄, 花席 5장, 四張付油菴 2部, 眞墨 20笏)	1672.10.14 신해년의 예
4 1672 (현종13). 10.말일	都頭禁徒倭房舍 1庫·都禁徒倭房舍 8庫·小禁徒倭房舍 5庫·木手房舍 2庫·代官房舍 1庫·酒家 1庫 合18庫·가진물 19庫(총 270여 칸)	공작미 100석, 公木 5동 지급, 禁徒倭 등에게 별도로 若干米布/가진물 造給	1672.11.1./정미년의 예
5 1674 (현종15). 2.10	동관 중대청 1庫·동관 서행랑 1庫·서관 동서행랑 각 1庫·鷹師倭房 1庫·禁徒倭房	공작미 100석, 公木 5동, 당하역관 문위, 관수 및 漂倭回謝 漂民領來 兩差倭에게 증물(각	1674. 2.11. 3.25/정미년의 예

		1庫·3代官~13代官房 각 1庫, 合 17庫 115間(460 間)/萬松院送使 卜物	각 白綿紬 3필 白苧布 3필, 黑麻布 3필, 白木綿 5필, 黃毛筆 15柄, 화석 3장, 四張付油芫 2部, 眞墨 15笏)/가건물 造給	
6	1674 (현종15). 12.3	一特送使·都船主倭所接 가건물 西邊短籬 失火	공작미 100석, 공목 5동, 당하역관 문위, 증물	1674.12.18
7	1677 (숙종3). 2.10	구왜관 동관 동행랑 13間·下代官 陸物庫 7間(20間)/선창에 쌓아 둔 공작미, 무역곡(米·太) 등 2,400여 석, 부특송·대관왜 입급 공작미·魚價米·料米 300석, 부특송 입급 料太 40석, 5일 잡물 등/病倭(禁徒倭) 1인, 奴馬 사망	공작미 200석. 소실된 미곡은 경상도 각읍에 분청/부특송에게 眞末 3석, 粘米 3석 10斗, 柏子 12斗, 胡桃 11斗, 眞油 6斗, 淸蜜 3斗, 脯肉 10첩 등과 魚價米 70石 9斗 2升, 料米 40석, 料太 40석 지급. 대관에게 花席 21張, 四張付油芫 4番, 小豆 3石, 雨傘紙 50張, 空石 35立, 草芫 12番 등과 魚價米 70석 두 2승, 요미 40석, 料太 40석 등 지급	1677.2.18./23
8	1680 (숙종6). 5.26	館守家(48間)	공작미 50섬, 공목 3동	1680.6.5./ 임자년 2차 예/1684~90 년 조선 조영
9	1684 (숙종10). 11	代官 下倭家 入接草家 4庫		1684.11.18
10	1706 (숙종34). 10.12	왜관 밖 萬松院送使 水木船에서 화재, 공작미 400석, 白絲 38稱, 공목 10동, 眞荏 10석, 太 12석, 기타 小小私卜	1특송사 상선연 乾物 지급	왜관 주변/ 1706.10.23
11	1708 (숙종34). 5.23	서관 동대청 서행랑 56칸	공작미 50석, 공목 3동	1708.6.1.,3,29/ 경신년 예/1714~15 년 조선 조영
12	1713 (숙종39). 11.9	造泡長 行廊, 下禁徒倭가 거처하는 2戶, 釀酒長 行廊, 격왜가 거처하는 3戶 합하여 90間	공작미 30석, 공목 2동 特給	1713.11.20

<표 1>을 통해서 왜관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조선의 구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정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왜관의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수리 및 재건을 해주었다. 요컨대, 왜관 건물 중 관수가 재판가 개시대청 등 동관 삼대청과 서관 삼대청 등 일본에서 도항한 외교사절의 숙소, 무역이나 외교업무상 중요한 기능을 갖는 건물이나 役人들의 숙소, 연향대청과 같은 부속시설의 경우, 화재 피해가 발생하면 조선 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또는 재건해 주었다. 이 건물들은 왜관 설치 당시부터 조선정부가 직접 지어 준 건물이었다.

『증정교린지』 권3 「감동」에는 초량왜관 당시 왜관 건물에 관한 조선 측의 수리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680년 화재로 소실된 관수가는 1684년부터 1690년까지, 1708년 화재로 소실된 서관 동대청 서행랑 56칸은 1714년부터 1715년까지 재건되었다. 한편, 이후의 화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733년 화재로 소실된 서관 동대청 동행랑 56칸은 1738년에, 그리고 1780년과 1822년 화재로 소실된 서관 동대청 서행랑과 서관 중대청도 1791년, 1825년부터 1828년까지 각각 재건해 주었다.²⁴⁾ 그러나 代官家, 서승왜가, 통사왜가를 비롯하여 각종 창고 등 관왜들의 생활공간은 쓰시마번에서 물자 및 경비를 모두 조달하여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였다.²⁵⁾ 1684년 대관가의 화재, 1706년 만송원송사 수목선의 화재, 1713년 造泡長 行廊의 소실, 1732년, 1768년 제1선 下房에 서의 화재에 대한 조선의 조치를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왜관 화재에 대한 조선의 구호에는 왜관 건물의 재건 외에 공복과 공작미의 지급, 그리고 역관 문위, 예단 증물 등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전례, 즉 정해진 기준에 준하여 이루어졌는데, 화재 피해의 규모와

24) 왜관의 수리에 대해서는 장순순, 앞의 박사학위논문 참조.

25) 『東萊府事例』, 「倭館」.

피해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조일외교와 무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왜관에 체류 중이던 정례사절이나 차왜와 같은 송사왜, 무역을 주관했던 대관 등에게는 공목과 공작미의 지급 외에도 별도로 왜관에 역관을 파견하여 위문하고 예단을 지급하였다.

1680년 6월 왜관에서는 메주를 만들던 하왜의 관리 소홀로 火桶이 벌어진 틈 사이로 불이 번져 관수가 등 인근 건물이 모두 타버린 화재가 발생하였다. 보고를 받은 동래부사 李瑞雨는 당시 재난을 당한 관왜들의 구호 방안에 대해서,

“왜관 실화는 비일비재하여 우리나라로부터의 慰恤之道 또한 그 輕重에 따르니 그 규정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지난 謄錄을 살펴보니 … 일찍이 丁未(1667년)에 왜관 실화시 공목 5동, 공작미 100석을 題給하고 역관을 보내 문위하였으며, 辛亥(1671년)에 각처 失火로 船隻이 연소했을 때 공목 10동, 공작미 100석을 제공하고 역관을 보내 문위하였습니다. 임자(1672년) 실화시 처음에는 공목 5동, 공작미 100석을 제공하고 역관을 보내 문위했는데, 공목 3동, 공작미 50석을 제공하고 역관을 보내 문위하지 않았습니다. 갑인(1674년) 실화 때 공목 5동, 공작미 100석을 제공하고 역관을 보내 문위하였으며, 병진(1676년) 실화 때는 問慰贈物이 없었으며, 丁巳(1677년) 실화 때 공작미 200석을 제공하고 역관을 보내 문위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실화 때는 문위증물이 없었습니다.²⁶⁾”

라고 하며, 전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면서, 화재로 우리나라의 칸수로 48칸에 달하는 관수가가 타버렸고, 관왜들은 급하게 몸을 피하느라 하나의 물건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전례에 따른 홀전의 거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관수가가 불에 타버렸지만, 신관(초

26) 『도중실화』 경신(1680년) 6월 초5일.

량왜관)에는 빈집이 대단히 많으므로 가건물의 마련 등은 필요없으며, 쓰시마에서 관수가를 改修해 달라는 청이 있거든 추후 관수와 함께 전례를 참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마침내 조정에서는 당시 화재가 인명 사망도 없었고 화재의 피해도 1667년과 1671년에 비해 심하지 않으므로 1672년 10월에 발생한 화재의 예에 준하여 공목 3동, 공작미 50석을 지급하였으며, 별도의 역관 문위는 없었다.

그러나 1713년(숙종 39) 화재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이때는 두부 만드는 곳에서 시작된 화재가 번져 하금도왜가 거처하는 2호, 釀酒長行廊, 격왜가 거처하는 3호 등 합하여 90여 칸이 타버렸다. 조정에서는 화재로 훼손된 건물은 쓰시마번에서 지은 것이며, 하왜들이 머무는 곳이므로 역관의 문위와 ‘증물’을 논할 바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불에 탄 건물이 100여 칸에 이르는 대규모 화재에 대해 “끝내 홀전을 내리지 않는 것 또한 물인정(終斬恤典 亦涉埋沒)하다”고 하면서 공목 2동, 공작미 30석을 특별히 마련해 줌으로써 ‘조정의 德意’를 표하기도 하였다.²⁷⁾

2. 쓰시마번(對馬藩)과 에도(江戸)에서의 화재

1) 쓰시마번 후추에서의 화재

『도중실화』에는 쓰시마번 후추와 에도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표 2>는 쓰시마번에서 발생한 화재를 정리한 것이다.

27) 『도중실화』 계사(1713년) 11월 20일, 24일.

〈표 2〉 쓰시마번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시기	피해 내용	조선 측의 구호 내용	보고일/비고
1	1659(효종10). 12.26	對馬 민가 100여 호	공작미 300석/ 예조 서계	1660.1.18
2	1662(현종3). 4.24	對馬 민가 2,000여 호	規外 還送	162.5.4 飛船 路引 無소지
3	1676(숙종2). 11.22	對馬 府中 민가 100여 호		1677.2.7
4	1686(숙종12). 8.8	對馬 府中 민가 130여호		1686.8.19

<표 2>에 따르면 쓰시마번에서 발생한 화재가 조선에 알려진 사례는 총 4건이다.²⁸⁾

1659년(효종 10) 12월 26일 쓰시마의 후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민가 100여 호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이듬해인 1660년 1월 동래에 보고되었다.²⁹⁾ 尹誠立과 별차 李信男이 조선에 건너온 소선 1척을 문정하는 과정에서 알려졌고, 이 사실은 부산첨사의 보고를 받은 동래부사와 경상좌수사의 장계를 통해서 조정에 보고되었다. 동래부사 鄭泰齊는 “비통하게도 對馬島에 화재가 있었는데도 위문하지 않았으니 실로 부족하게 여겨 (대마도가) 원망하게 되었다”고 조정에 보고하면서,³⁰⁾ 4월 23일에 화재로 인해 살아갈 방도가 막막해진 쓰시마를 긴급 구제해주는

28) 물론 이것이 쓰시마번에서 발생한 화재 모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중실화』의 수록 기간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도중실화』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1661년(현종 2) 12월에 발생한 화재로 쓰시마 후추의 사찰과 민간 2,000여 호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선에 보고된 바 있으며(『현종개수실록』 현종 2년 12월 24일(기사)), 1663년(현종 4) 쓰시마에서 발생한 화재의 구호를 위해 조선정부가 공작미 300석을 하사한 사례가 있다(『현종개수실록』 현종 4년 4월 3일(경자)).

29) 『도중실화』 경자(1660년) 1월 18일; 『춘관지』 권3 「附馬島江戶失火」.

30) 『증정교린지』 권6, 「문위각년례」.

방도가 비변사에서 논의되었다.³¹⁾ 당시 조정의 중론은 쓰시마의 상황이 매우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 저들이 구제 요청을 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제하자는 것이었다. 영의정 鄭太和와 좌의정 沈之源은 조선 정부의 선제적 구제가 우리의 ‘德義’를 알리는 것이며, “이때 救活한다면 우리에게 진실로 생색이 될 것이며, 저들이 비록 蠻夷라 하더라도 어찌 德意에 깊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입장이었다. 형조판서 洪重普는 100여 석을 쓰시마에 내려줄 것을 건의하였다. 결국 조정의 논의는 외국을 재난에서 구하는데 100석의 쌀은 너무 약소하다는 국왕 현종의 의견에 따라 구급미로 300석의 쌀을 쓰시마에 지급해 주기로 정하였다.³²⁾

때마침 쓰시마의 3대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에도에서 쓰시마로 돌아온 터였으므로 조정에서는 그해 11월 쓰시마에 문위행(당상역관 김근행, 당하역관 韓相國)을 파견하기로 되었는데, 그때 겸하여 쌀 300석을 하사하고 동래부사 정태재 명의의 서계를 보내 쓰시마번주를 위문하였다.³³⁾

3년 후 1663년(현종 4) 3월에도 번주 소 요시자네의 환도 문위를 위한 문위행(당상역관 김근행, 당하역관 李鎭翼)이 실시되었다. 이때 쓰시마번에서는 김근행을 통해 1660년 화재 당시 조정에서 300석의 쌀을 쓰시마에 하사한 사실을 예조참의의 문서에 기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³⁴⁾ 쓰시마에서는 막부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生輝之地’로 삼고 싶다는 취지였다.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첨서한 예조참의의 서계를 훈도를 통하여 왜관에 전달하였는데, 왜관에서는 번주가 아직 에도로 들어가기

31) 『도중실화』 경자(1660년) 4월 23일.

32) 위와 같음, “上曰救災外國 百石之米似爲太略 更爲商量加給可也”.

33)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경자(1660년) 11월.

34)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癸卯(1662년) 3월, “渡海譯官金謹行等 到馬島問答手本中 島中失火 朝廷賜米三百石 而只言於東萊答書中 願添入於禮曹別副中云云”.

전이므로 비선편으로 전하겠다고 하면서 매우 기뻐하였다.³⁵⁾ 쓰시마번 으로서는 자신들의 재난에 대해 조선 정부가 취해 준 구호 사실을 막부에 알림으로써 조선과의 교섭에서 自藩의 위상을 막부에 확인시키고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1662년 5월 초에 두왜 1인과 격왜 7명이 탄 비선이 조선에 건너와 왜관 선창 밖 바다에 머물러 있었다. 혼도 李尙漢 등의 문정 결과 지난 4월 24일 쓰시마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민가 2,000여 호가 모두 타버린 사실을 왜관에 알리기 위해 도항해 온 것이었다. 그런데 비선은 조선과의 통교 규정상 치참해야 할 노인을 소지하지 않았다. 두왜의 주장은 노인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바다를 건너오던 중 풍랑을 만나 다른 배로 급히 갈아 올라타면서 노인을 바다에 빠트려 분실했다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화재 사실을 알리기 위해 건너왔으므로 비선의 왜관 입관을 허가하는 논의도 있었으나, 결국은 노인을 확인한 이후라야만 입관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화재라는 긴급 사안을 이유로 노인을 소지하지 않은 비선을 왜관에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전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³⁶⁾ 이로써 당시 비선은 규정 위반으로 환송되었다.

1677년(숙종 3) 2월 초에는 쓰시마에서 세견선 4척이 조선에 건너왔다. 1676년 11월 22일 후추의 민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0여 호가 타버린 사실이 관수를 통해 쓰시마 내의 상황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³⁷⁾ 그리고 1686년(숙종 12) 8월 초에도 후추의 동쪽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민가 130여 호가 모두 타버린 사실이 조선에 전해졌다.³⁸⁾ 그런데 위 두 차례의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의 규모가 이전보다 상

35) 『도중실화』 癸卯(1663년) 4월 24일.

36) 『도중실화』 임인(1662년) 5월 초4일;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임인(1662년) 1월.

37) 『도중실화』 정사(1677년) 2월 초7일.

38) 『도중실화』 병인(1686년) 8월 19일;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병인(1686년) 8월.

대적으로 작아서였는지, 아니면 당시 국내 상황에 따른 것이었는지³⁹⁾는 단정할 수 없으나 1662년과 같은 구호 조치는 없었다.

이상을 통해 쓰시마번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이 조선에 알려지면 조선정부는 화재의 규모 및 경중에 따라서 혹은 국내 사정에 따라 구호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⁴⁰⁾ 그러나 그 절차가 조선이 정한 통교 규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한 조건이었다.

2) 에도(江戸)의 화재

에도는 지금의 도쿄(東京)로, 도쿠가와 막부가 위치한 일본의 정치 중심지였다. 에도에는 쓰시마번 등 각 번의 번주(大名)의 처소인 에도번저(江戸藩邸)가 있었다. 다음은 에도에서 발생한 화재가 『도중실화』에 수록된 것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에도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시기	화재의 내용	조선정부의 구호 내용	보고일/비고
1	1673 (현종14).6	江戸 민가 5만여 호		1673.6.27. 改年號(延寶)
2	1682 (숙종8)	江戸 島主家	역관을 보내 관수왜 문위, 도주에게 보고하게 함/關白嗣子 弔慰時 失火問慰 겸함/除書契只以別幅 口陳致慰	1683.7.27

39) 1676년 이전인 1670년(현종 11))과 1671년에는 경술·신해대기근(庚戌辛亥大飢饉) 또는 ‘경신대기근’이라 불리는 대기근이 있었다.

40) 1661년(현종 2) 12월 쓰시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일 낮밤으로 사찰과 민간 가옥 2,000여 호가 불에 타버렸다. 당시 쓰시마에서는 왜관을 통해 동래부에 구호, 즉 물품을 보내주기를 요청했으나 동래부사 李元禎은 조선 내 기근을 이유로 거절하였다(『현종개수실록』 현종 2년 12월 기사).

3	1688 (숙종14)	江戸 민가 1천여 호		1689.3.14. 改年號(貞享 →元祿)
4	1698 (숙종24). 9.6	江戸東城外失火, 수만 家戶, (各州)島主之家 太半 燒燼		1698.10.29
5	1703 (숙종29). 12	江戸城内 各州島主之 家 및 對馬島主家 燒燼, 화재로 10여만 명 사망		1704.6.19. 改年號(元祿 →寶永)
6	1713 (숙종39). 12.12	江戸 國王殿宇, 城外 민 가 50여 호 延燒		1713.11.20.

『도중실화』에 의하면, 에도에서 발생한 화재가 조선에 알려진 것은 6건이다. 이 가운데 1673년, 1688년, 1703년의 화재는 피해 규모가 대단히 커서 막부에서는 화재를 이유로 연호까지 바꿔야 할 정도였다.

에도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조선의 대응이 왜관과 후추에서와 달리 그 기준이 화재의 피해 규모, 즉 경중이 아니라 쓰시마번의 피해 여부에 달렸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화재 피해가 너무나 커서 연호까지 바꿔야 했던 1673년, 1688년, 1703년의 화재에 대해서 조선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1713년 12월, 쇼군의 저택(國王殿宇)이 불에 탔고, 성 밖의 민가 50여 호도 타버린 화재가 있었을 때조차도⁴¹⁾ 조선 정부의 구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반해 쓰시마번의 에도번저가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는 달랐다.

1682년 에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쓰시마의 에도번저를 비롯해 보물과 재화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다. 이 사실은 이듬해인 1683년 6월 관수를 통해 조선에 전해졌다. 당시 관수는 화재 사실을 동래부에 전하면서

41) 『도중실화』 갑오(1714년) 2월 초6일.

왜관에서 화재가 있었을 때 조정에서 역관을 내려보내 관수를 문위한 전례를 들면서 쓰시마번에 문위역관을 파견하지는 않더라도, 화재 피해를 위문하는 역관을 왜관에 파견해 준다면 이 사실을 번주에게 알리겠다고 요청하였다. 때마침 쇼군의 후계자 도쿠가와 도쿠마쓰(德川德松)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조선에 전해진 터라⁴²⁾ 조정에서는 쓰시마번에 문위행을 파견할 때 겸하여 에도의 쓰시마 번저의 화재사건을 문위하기로 정했다.⁴³⁾ 당시 관수는 문위행이 지참한 서계나 별폭 중에 구호한 예가 있다면 막부에 체면이 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조정에서는 왜관에 역관을 보내 문위하고 그 사실을 쓰시마번주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1683년 1월에 쓰시마로 건너간 문위행은 ‘關白嗣子弔慰’와 겸하여 화재를 문위하였다. 방식은 화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계없이 별폭만 보내고 구두로 위로하는 것이었다.⁴⁴⁾

에도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조선의 쓰시마번에 대한 중시 경향은 1772년(영조 48)의 화재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그해 4월 17일 관수는 왜관에 양역(훈도와 별차)을 불러 에도의 쓰시마번저가 화재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에도의 대화재로 쓰시마번의 재정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향후 1,2년 사이 쓰시마에 보낼 예정인 공작미 등의 지급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조선이 보관 중이던 공작미는 임진년조(1772년)의 2,000俵, 신묘년조(1771년)의 겹대미 1,000표였는데, 당시 조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주었다.⁴⁵⁾

42) 『증정교린지』 권6, 「문위각년례」.

43) 『증정교린지』 권4, 「홀진」.

44) 『도중실화』 계해년(1683년) 7월 27일;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계해(1683년) 7월; 『변례집요』 권10, 「恤典」, 계해(1683년) 6월, 7일.

45) 『分類紀事大綱』 VII, 「分類紀事大綱」 10, 「江戸御屋敷焼失」.

IV. 맺음말

지금까지 『도중실화』를 중심으로 쓰시마의 화재 발생 실태와 조선의 구호 조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어서 조선 정부가 쓰시마에서 발생한 화재를 정리하여 『도중실화』라는 등록으로 보관하게 된 배경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정리한 여러 문헌에서 ‘홀전’ 항목을 별도로 둔 배경을 추적함으로써, 관념적으로 존재했던 조선시대 쓰시마인식이 조선의 대일정책 속에서 어떻게 표상되었는지를 추론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쓰시마 관련 지역의 화재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준, 즉 전례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화재의 규모, 피해 대상, 국내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전개되었다.

조선은 왜관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화재가 발생하면 부산진과 동래부는 곧바로 화재 진압에 개입하였다. 화재 사실을 곧바로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조정에서는 관왜, 즉 쓰시마인에 대한 긴급구제를 행하였다. 경상도 각 군의 물력을 동원하여 임시로 거주할 가건물을 지어주고, 취사도구마저 불에 타버려서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는 왜관 주변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밥을 지어 제공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 주었다.

그리고 왜관의 주요 건물, 즉 일본에서 도항해 온 외교사절의 숙소나 무역 및 외교 업무상 중요한 기능을 갖는 건물, 연향대청 등 부속시설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선 측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수리하거나 재건해 주었다. 또한, 화재의 규모와 피해 대상에 따라 전례에 준하여 공목과 공작미를 지급하고, 역관을 통해 위문하거나 예단과 증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왜관에 체류 중 화재 피해를 입은 정례사절, 차왜, 무역을 주관하던 대관 등에게는 별도로 역관을 파견해 위문하

고 예단을 지급하였다.

쓰시마의 후추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조선은 구급미를 제공하며 구호 조치를 취했다. 쓰시마번은 이러한 조선의 구호 사실을 의도적으로 막부에 보고하여, 조선과의 교섭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드러내고 이를 확인시키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한편, 왜관이나 쓰시마번에서 발생한 화재와 달리 에도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쓰시마번의 피해 여부에 따라 달랐다. 에도의 쓰시마번저가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는 왜관에 역관을 보내 문위하거나 문위행 등을 통한 대응이 있었다. 그러나 연호를 바꿔야만 할 정도의 대형 화재나 심지어 쇼군의 거주 공간이 불에 탔을 때조차도 조선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의 화재에 대한 대응이 철저히 쓰시마 관련 지역에 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 논리는 “먼 나라 사람을 대하는 제왕의 도리라는 관점에서 (대마도인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변정에 관계된 일이므로”, “재앙을 물리치고 이웃을 구출하는 도리에서 별도로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고 구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해가 큰 상황에서 홀전을 내리지 않는 것은 매물찬 일이므로”, 그들에게 ‘조정의 진념의 뜻’, ‘조정의 덕의’를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선의 논리는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

조선은 전기부터 쓰시마의 재해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조선 전기에도 삼포왜관이나 쓰시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의 피해가 확인되면, 예조에서는 郎官을 보내 진휼하거나 경상도 관찰사가 진휼하는 것이 구례였다.⁴⁶⁾

1429년(세종 11) 내이포에 머물러 사는 일본인 37호가 화재로 가재와 미곡이 모두 타 버렸을 때 조정에서는 양식이 떨어진 자를 가려서 환

46) 『세조실록』 세조 7년 3월 기유.

자곡(還上穀)을 지급해 구휼하였으며⁴⁷⁾, 1458년(세조 4) 경상도 제포에 거주하는 항거왜인의 막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조정에서는 피해 일본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事目이 논의되었다.⁴⁸⁾ 1461년(세조 7) 3월에는 제포왜관에서 38호가 화재로 연소되었는데, 경상도관찰사의 진휼이 있었다.⁴⁹⁾ 이듬해인 1462년에도 제포의 항거왜인 三未時羅의 집에서 불이나 30호가 연소하였는데, 이때에도 피해의 경중에 따라 경상도 관찰사의 진휼이 행해졌다.⁵⁰⁾

1461년 4월 쓰시마에서 도주 모의 사망과 쓰시마의 화재 사실이 전해졌다. 조정에서는 도주 모의 사망을 문위하기 위해 상호군 皮尙宜를 宣慰使로 파견하면서 “殿下께서 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였다. 또한 여러 섬의 굶주린 무리가 장사를 핑계로 도둑질하러 나오려는 것을 (대마도주께서) 달랬다는 소식을 전하께서 들으시고, 이를 가상히 여기시어 특별히 관원을 보내어 선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전했다. 상호군 피상의가 지참한 서계 속에는 쓰시마의 화재에 대해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물품 목록이 기록된 별폭이 함께 내려졌다.⁵¹⁾

조선 정부가 쓰시마의 재난에 대해 이렇게 진휼과 구호에 진심이었던 것은 비록 쓰시마가 영토적으로는 일본에 속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조선의 번속국으로 간주되었던 쓰시마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⁵²⁾ “삼포에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編氓과 같이 보므로 그 失火

47) 『세종실록』 세종 11년 1월 경신.

48) 『세조실록』 세조 4년 윤2월 경진, 신사.

49) 세조실록』 세조 7년 3월 기유. 한편,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울산염포지도』에 “成化 10년 갑오 3월에 예조좌랑 南怡가 삼포에 화재를 당한 왜인을 구휼하기 위해 갔다가 그려서 온 것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그림도 1474년(성종 5) 남이가 왜관의 화재로 재난을 당한 일본인들을 직접 구휼하고 삼포를 조사한 뒤에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50) 『세조실록』 세조 8년 4월 경오.

51) 『세조실록』 세조 7년 4월 임진.

52)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선과의 접촉 과정에서 쓰시마 스스로 조선의 藩籬 혹은 藩

한 사람을 의리상 당연히 구휼하는 것은 본디 별다른 은혜가 아니다”라고 예조의 서계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⁵³⁾, 조선은 국초부터 쓰시마인에 대해 편맹, 즉 조선의 호적에 편입한 백성, 조선 국왕이 그 품안에서 ‘一視同仁’하여 어루만져 보살펴주는 존재로 파악하는 인식을 드러내 왔다.⁵⁴⁾

이러한 조선의 쓰시마에 대한 인식은 관념상으로나마 조선후기까지도 여전히 유효했으며, 결과적으로 쓰시마 관련 지역의 화재에 대한 조선의 대응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은 조선 후기 대일관계를 정리한 여러 외교자료집 등에서 ‘홀전’의 항목이 설정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본 연구가 『도중실화』에 수록된 화재를 중심으로 조선의 쓰시마인식이 대일정책 즉, 쓰시마 및 막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본 시론적인 연구에 그쳤다는 점은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기적 범위를 조선후기 전체로 확장해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屏으로 자칭하는 기사와 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쓰시마도주가 조선에 보낸 서계에서 스스로 조선의 藩籬나 藩屏이라고 稱臣하면서 충성을 바치겠다는 사례는 쉽게 찾아진다(『세종실록』 세종 10년 6월 병신; 『세조실록』 세조 10년 6월 경자; 『성종실록』 성종 18년 2월 병자).

53) 『성종실록』 성종 5년 11월 신유, “三浦居人, 我國視同編氓, 其失火之人, 義所當恤, 固非異恩…”

54) 정다함, 「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屏認識의 형성과 敬差官의 파견」, 『東方學志』 141, 2008, 248쪽; 『세종실록』 세종 원년 10월 기축, 『세조실록』 세조 13년 2월 기유.

| 참고문헌 |

1. 사료

『島中失火』(奎 12914)

『各樣謄錄 下』(奎 貴 9910)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萬機要覽』, 『增正交隣志』, 『邊例集要』, 『春官志』

『世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分類紀事大綱』 VII, 『分類紀事大綱』 10, 『江戸御屋敷焼失』

『草梁話集』

2. 저서 및 논문

金相湜, 「조선시대의 公文書管理」, 『書誌學研究』 1, 1986.

이현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回謝差倭謄錄』 解題」, 『奎章閣』 63, 2023.

장순순, 「倭館變遷史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_____, 「조선시대 對馬島 연구의 현황과 과제」, 『東北亞歷史論叢』 41, 2013.

_____, 「통신사의 사행록을 통해서 본 조선 지식인의 대마도 인식과 그 추이(推移)」, 『한일관계사연구』 75, 2022.

정다함, 「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屏認識의 형성과 敬差官의 파견」, 『東方學志』 141, 2008.

하우봉, 「한국인의 대마도 인식」,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

_____, 「전근대시기 한국과 일본의 대마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한문중,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저술의 조사연구-對日關係 謄錄類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 1999.

투고일 : 2024. 09. 19. 심사완료일 : 2024. 10. 31. 게재확정일 : 2024. 11. 22.

| Abstract |

Joseon's Response to Fires in Tsushima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Based on *Dojung Silhwa*

Chang, Soon-Soon

This paper investigates how Joseon's perception of Tsushima influenced its policies toward Japan and Tsushima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specifically focusing on its response to fires in Tsushima, a topic that has not been explored.

The study utilizes *Dojung Silhwa*, a documentation on fires that occurred in Waegwan, Fuchū, and Edo, from January 1660 to February 1714, as well as the relief actions taken by Joseon government in response.

Joseon's reactions to these fires generally followed established precedents and wer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the scale of the fire, the significance of the affected individuals, and the domestic economic situation. Joseon government was most responsive to fires at the Japanese trading posts in Busan, while its response to fires in Edo depended on whether the Tsushima had suffered damage.

It is highly likely that Joseon's aid to Tsushima was affected by its perception of Tsushima as a vassal state, despite Tsushima being part of Japan. This perception appears to have persisted into the late Joseon period and likely contributed to the inclusion of 'Hyuljeon(恤典)' in the diplomatic records that documented Joseon's relations with Japan during this time.

Key Words : *Dojung Silhwa*(島中失火), Tsushima(對馬), Waegwan(倭館), Hyuljeon(恤典), Perception of Tsushima in Joseon.

